

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·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8월 9일
- 회부일자 : 2001년 8월 10일

3. 제정이유

-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, 동법시행령이 2000.12.20 개정됨에 따라,
-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·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
-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개발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·징수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은 일간신문,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,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수 있는 위치로 시장, 군수 및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공고하고,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

- 납부고지서는 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의 명의로 하며, 고지서 내용에는 납부의무자, 납부금액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함
-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함
-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도록 함
-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·징수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사무를 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·군수에게 교부함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·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,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
-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시 필요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분양 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고 사전 주택분양공고시 본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
-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는 것으로
-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